

제 9차 내과 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内科分科專門醫 修練 및 資格認定 等에 關한 規程과 同 施行規則

2001. 3. (재개정판, 4판)

大韓內科學會內科分科專門醫 管理委員會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내과 분과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내과분과전문의”라 함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분야 전문의 및 보조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은 해당분과의 내과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분과)

대한내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내과분과전문과목과 해당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 1) 소화기 내과분과
- 2) 순환기 내과분과
- 3) 호흡기 내과분과
- 4) 내분비-대사 내과분과
- 5) 신장 내과분과

6) 혈액-종양 내과분과

7) 감염 내과분과

8) 알레르기 내과분과

9) 류마티스 내과분과

제 5 조 (조직)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전문의 관리이사가 되고 9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
- (2) 위원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3)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 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
- (3)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수련)

- 1)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2)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균제대자 :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 4)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분과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내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2)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정료를 정수한다.
 - (3) 자격인정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시 본회 회원으로 연속 2년이상의 회원경력을 갖는 자

- (2) 대한내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상기 제 1, 제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 (4) 2년 이상 내과전문의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20시간 이상 해당분과 연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인정하며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5)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해당 분과학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경우 자격 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험)

- 1)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내과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하에 분과위원

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분과위원회
- 2)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1)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내과학회지에 공고하며 이때 제 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8 조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 10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구 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1. 분과별 기준(예, 소화기분과)

분 과	인 정 학 회	관 련 학 회
소 화 기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병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간담췌학회 국제췌장학회 미국소화기병학회,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미국암학회, 미국간연구회 아태소화기병학회, 아태소화기내시경학회 아태암학회, 아태간연구회 유럽소화기병학회,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 유럽암학회, 유럽간연구회 일본소화기병학회,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일본암학회, 일본간연구회

1) 연수교육

교육 종류	평 점
1. 연수강좌	1평점/1시간
2. 실습	1평점/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1일
관련학회	1평점/1일

- (1)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 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한다.
- (2)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1 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
- 2)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는 가산점수 2평점을 더 준다. 종설 및 중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별표 2> 논문평점인정 학술지 (예, 호흡기 분과)

호흡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내과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순환기학회지 대한구급의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암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Respirology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
- “수련병원”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
-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3> 전임의 정원기준

분 과	전임의 정원
소 화 기	교육지도자 수 - 0
순 환 기	교육지도자 수 - 0
호 흡 기	교육지도자 수 - 0
내분비/대사	교육지도자 수 - 0
신 장	교육지도자 수 - 0
혈 액/종 양	교육지도자 수 - 0
감 염	교육지도자 수 + 1
알 래 르 기	교육지도자 수 + 1
류 마 티 스	교육지도자 수 - 0

교육지도자 수

소화기, 순환기 : 2명 이상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 1명 이상

- 신원식 : 제 9차 내과 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

제 6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내과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와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수련내용

1. 공통기준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년 중 10평점 이상(학술대회 참석평점은 불인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이상 구연 혹은 포스타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 참조)에 제1저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

2. 분과별 기준 (예, 소화기 내과)

분과	수련 내용	기준
소화기	수련기간중 총 진료환자수	(1)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위장관질환 50명 이상, 간, 담도, 췌장 및 기타 질환 50명 이상)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30건 이상
	교육 내용	(1) 소화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소화기내과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능력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5) 인성교육
	학술 회의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논문 점수	6평점 이상

3. 분과별 시험기준 요약

분과	학술대회	논문점수
소화기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6평점이상
순환기	수련기간1년 중 1회 이상 참석	8평점이상
호흡기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내분비-대사	수련기간1년 중 3회 이상(2회는 당뇨병or내분비참석)	8평점이상
신장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혈액종양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2회 이상 참석	
감염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총2편이상
알레르기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류마티스	수련기간1년 중 2회 이상 참석	총2편이상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1)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 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전임의 임용보고)

- 1)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각 분과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2)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5> 수련병원지정기준 (예, 순환기 분과)

분 과	수 련 병 원 지 정 기 준
순환기	<p>(1) 교육지도자 수 : 2명 이상 (2) 병상수 : 심혈관계 중환자관리실을 갖춘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검사시설 : 비관혈적 검사 :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도 심장핵의학검사 기립경사검사 관혈적 검사 : 심도자검사 심혈관조영검사 전기생리학적 검사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개심술 및 관동맥 우회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혈의학과</p>

제 14 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응시자격을 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 내과 전문의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2)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 자격시험과목은 해당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 2)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응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2)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내과분과전임의 수련증명서
- 3)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첨부 (1)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외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별책표지
- 4)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5)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함판)

제 6 조 (시험위원회의 선출)

- 1)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출제 및 시험실시)

- 1) 시험문제는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분과별 출제위원 회에서 출제한다.
- 2) 시험은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분과별로 실시한다.

제 8 조 (시험문제 및 배점)

- 1) 실기시험은 70점 만점으로 하되 영상매체 등 객관적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2) 구술시험은 30점 만점으로 하되 모든 응시자가 동일질문에 응답하도록 한다.

제 9 조 (채점)

채점은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합격자 결정)

-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2) 합격 결정은 실기시험 35점 이상, 구술시험 15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인정증을 생신 교부한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생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내과분과전문의 인정증 사본
- 2)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 3)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 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내과분과전문의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 자격 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 신완식 : 제 9차 내과 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

2003년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업무 일정표

월 일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2. 28	당해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 및 세부계획서 내과학회지 계재, 수련병원 배포	
3. 29	자격 인정 시험 공고 내과학회지 계재, 수련병원 배포	분과시험 문제의뢰
4. 26	제9차 내과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춘계학술대회 중 개최)	
5. 1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및 기록카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에 대한 제출고지	
5. 31	상기 명부 및 기록카드에 대한 접수 마감	
6. 1~4	분과전문의시험 원서교부	
6. 5~7	분과전문의시험 원서접수	
6. 9~14		응시자격 심사
7. 7~20	제7회 자격 인정 시험	분과별 시험 실시
7. 21	자격인정자 사정, 합격자 발표	
8. 1	자격 개신 신청 고지	
8. 30	자격 개신 접수 마감	
9. 2	의년도 연수교육 신청 및 수련병원 지정 신청 고지	
9. 1~6		자격 개신 심사
9. 30	의년도 연수교육 신청 및 수련병원 지정 신청 접수 마감 자격 개신자 확정	
10. 15	자격 인정증 및 자격 개신증 발급	
11. 15	의년도 연수교육 신청 및 수련병원 지정 신청 심사	
11. 29		의년도 연수교육 계획 및 수련병원 지정 확립
12. 31	의년도 수련병원 지정서 발급	